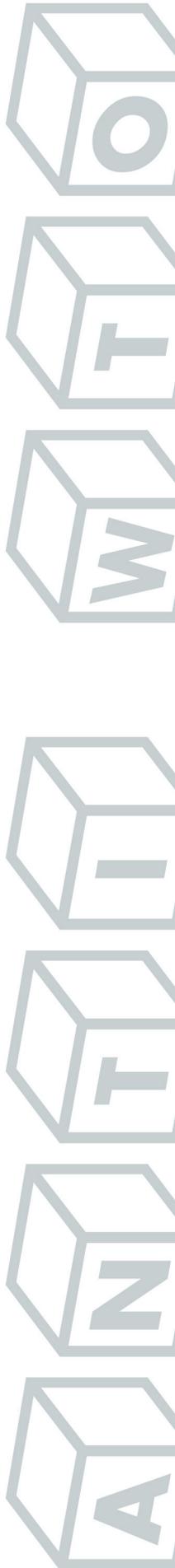


WTO 서비스협상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집

#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해 알고싶은 열가지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 **1부 WTO 서비스협정과 ‘GATS 2000’ 협상의 본질을 알려주마! 04**

- 1. WTO 서비스협정이란 무엇인가? 06
- 2. 서비스협정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나? 09
- 3. WTO 서비스협상 어디까지 왔는가? ‘양허안’ 을 제출한다던데, 무엇인가? 14
- 4. 한국 정부 양허안,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7

## **2부 민중의 제반 권리를 짓밟아버리는 WTO 서비스 협상 22**

- 5.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 공교육·공공의료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24
- 6.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 철도, 에너지, 상수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 30
- 7.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 금융화, 투기화, 항시적 경제위기 34
- 8. 자발적 자유화란 무엇이며, credit은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인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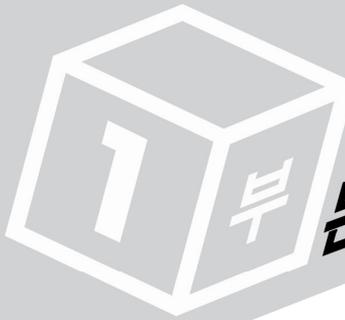
## **3부 WTO 서비스 협상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켜내자! 42**

- 9. “개방이 대세다?!” 노무현 정부의 진실...? 혹은 거짓! 44
- 10.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47

## **[별첨] 서비스협정의 멋진 악몽! 초국적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50**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해  
알고싶은 열가지



**WTO 서비스협정과 GATS 2000 협상의  
본질을 알려주마!**

1. WTO 서비스협정이란 무엇인가?
2. 서비스협정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나?
3. WTO 서비스협상 어디까지 왔는가?  
'양허안'을 제출한다던데, 이걸 도대체 무엇인가?
4. 한국 정부 양허안,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1 WTO 서비스협정이란 무엇인가?

“WTO는 지역 및 양자간 무역협정, 투자협정의 네트워크와 함께 사유화와 시장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의제를 고정시킨다. 이 지점에서 세계은행과 IMF, 더불어 WTO가 세계경제 지배에 있어 제1의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는 행정, 사법, 입법 권력을 가진 세계정부이다. 그 거대한 무역규칙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농업협정(AoA),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서비스협정(GATS) - 들은 세계 경제의 헌법이 된다.” - 토니 클라크, 폴라리스연구소 소장, 2004년 공공연대 주최 국제심포지움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했다. 공산품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던 이전의 느슨한 무역 규범인 GATT 체제에 한계를 느낀 자본 강대국들은 포괄적이며 높은 권한을 가지면서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WTO는 단순히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엔진이자 ‘세계경제를 관장하는 정치권력’이 되었다. 이전에 ‘무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한 국가의 정책과 법을 바꾸도록 강제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긴 것이다.

## ■ WTO 서비스협정: 자유화, 사유화 달성을 위해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무한한 확장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을 희망하고...”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전문 중

“미국이 서비스산업에서 있어 전세계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 미 무역대표 로버트 칠릭, 전미서비스기업연맹과의 만찬, 2003년 12월

특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이하 서비스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출범하면서 제정한 여러 다자간 무역협정 중 하나이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 확보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꽃’이다. WTO 서비스협정은 WTO가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초국적 자본의 이윤의 원천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을 상품화·시장화하는 기구라는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준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자본 강대국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국 내 서비스, 금융 및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찾아나서야 했다. 이 속에서 WTO가 탄생한 것이다. WTO가 설립된 1995년 이전에 존재했던 GATT는 전통적 상품거래에 국한된 관세만 철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던 강대국들의 성에 차지 않았다. 즉, WTO는 위기에 직면한 초국적 자본이 금융, 서비스, 생명체 등 ‘미 개척지’를 정복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윤의 원천을 확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작품이다.

*WTO 서비스협정과 이에 기반한 협상의 주요 목적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사유화이다.*

WTO는 이런 서비스협정을 기반으로 2000년도에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협상 라운드’인 ‘GATS 2000’ 협상(이하, 서비스협상)을 발족 시켰고 본격적인 이윤 사냥에 나섰다. WTO 서비스협정과 이에 기반한 협상의 주요 목적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사유화이다. 자유화(liberalization)란 지금까지 경쟁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역을 개방하는 것이다. 즉,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호하였던 영역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내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유화(privatization)란 공적 사업을 타 공기업 내지는 사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기업을 사기업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에서부터 일부 사업을 분사 또는 아웃소싱하는 것까지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도하개발의제와 함께 GATS 2000 협상은 2006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WTO의 새로운 무역규범이 출범하면,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절정에 달하게 되며, 전세계 민중에 대한 수탈 역시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초국적 기업에 의한, 초국적 기업을 위한,  
초국적 기업의 서비스협정 :  
서비스협정을 움직이는 '큰 손'

### 전미서비스기업연맹

#### (US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 USCSI)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서비스분야 로비 집단이며, WTO 서비스협정의 탄생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들은 GATT에 '서비스의 거래'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이윤을 맛볼 수 있다는 계산 하에 80년대 내내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를 로비하여 결국 서비스협정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90년대 말 또 한 차례 로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GATS 2000' 협상 발족을 관철시켰다. (AT&T, 미국은행가협회, 씨티그룹, 페덱스, 할리버튼, 마이크로소프트, 타임워너 등 수십개 기업)

### 유럽서비스포럼

#### (European Service Forum; EPF)

WTO 서비스협정을 위해 만들어졌고 서비스협정을 위해 움직인다. 유럽연합 무역집행위원장이 레온 브리탄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동안 유럽연합에게 '전미서비스기업연맹'과 같은 강력한 단체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GATS 2000 협상을 앞두고, 유럽 서비스기업들을 조직화하기로 마음 먹었으며, 유럽서비스포럼을 만들어냈다. (알리안츠, 브리티쉬 텔레콤, 프랑스텔레콤, DHL, 유럽항공사협회, 프라이스워터쿠퍼스, 유럽엔지니어링컨설턴트협회, IBM, EMI, 비벤디, 수에즈 등 수십개 기업)



## #2 서비스협정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나?

서비스협정의 목표, 대상 뿐 아니라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규범과 원칙을 살펴보면, 서비스협정의 반민중성과 파괴력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런 기본 원칙은 WTO 서비스협정 뿐 아니라 양자간 진행되는 각종 FTA 및 투자협정에도 모두 들어있다.

### ■ 서비스협정의 기본 규범과 원칙

#### 초국적 기업에 '동등한' 경쟁기회를!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세계 무역체제에 있어서 한 정부가 외국 서비스와 공급자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외국 자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규범을 위반하는 정부에 대해 WTO가 벌칙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국내 서비스기업보다 해외 서비스 공급자를 더 우대하게 된다는 데 (그렇게 되면 국내공급자는 '역차별'이란 명분 하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 초국적 기업에 무한한 권리를!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특정 협정에 합의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우대를 보

장받는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실상 그 국가에 소재한 ‘초국적 기업’을 의미한다. 양자간 FTA의 경우 이런 조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FTA를 맺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WTO와 같은 다자간 체제에서는 전세계 초국적 기업들에게 무한한 ‘주권’을 부여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 **각종 보호조치는 철폐해야 할 무역장벽! 시장접근(Market Access)**

특정 서비스가 서비스협정에 한번 포함되면 WTO의 모든 회원국은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해외 서비스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개도국 정부들은 일반적으로 쿼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 그런데, 서비스협정의 시장접근 원칙은 이런 제한을 불법화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불법이며, 예컨대 생태보전을 이유로 관광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불법이 된다. 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생태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초국적 자본이 시장을 접근하는 데 방해되면 불법화된다.

### **기술이전, 고용의무는 불법! 이행의무 부과(Performance Requirements) 금지**

한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게 투자에 있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예컨대 국내 물자를 구매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던가, 내국민을 고용해야 한다든가 노동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이전 또는 고용이 없는 투자’, 초국적 자본의 ‘투기’ 행각을 부추기는 효과를 발휘하고, 초국적 기업은 모든 혜택을 즐기는 반면 아무런 의무를 지닐 필요가 없어진다.

### **국유기업 설립하려면 보상금 지급하라! 국유기업(State Enterprises) 제한 조치**

정부가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유기업이나 공기업을 설립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한다. 서비스협정의 기본 목표가 공기업 사유화인데, 게다가 재국유화, 새로운 국유화를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독점적)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타 해외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 공기업으로부터 나온 이윤을 다른 공기업에 지원하는 ‘교차보조금’도 금지된다.

### **초국적 기업에 방해되는 규제와 법 모두 없애라!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정부가 초국적 서비스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각종 법률과 규제를 제한하는 규범이다. 게다가 이 규범을 위반하는 ‘국내규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쓰레기처분 허가, 노동 또는 환경 기준, 식수 안전기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안녕 및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서비스협정이 사실상 ‘국제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국내법이 초국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판정나면 이런 국내법은 폐기·개정해야 한다. 이는 민중의 기본권을 초국적 자본 앞에 무력화하는 것이며, 심각한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한일FTA 관련 일본 자본은 ‘비관세 무역장벽’이란 명칭 하에 한국의 각종 노동기본권을 ‘무역장벽’이라 인식,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WTO는 헌법이다. 여기면 처벌받는다! 구속강제(Binding Enforcement)**

위에서 언급한 모든 규범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절차(사실상 ‘재판’)를 통해 강제된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이 한국의 해외이사 제한 조치가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위 여러 규범과 아울러 WTO의 구속력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 **앞으로만 전진! 절대로 후퇴는 불가능하다!**

특히 공공성을 강한 분야의 경우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를 일정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내지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 곳곳에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울뿐더러,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른 여러 규범들(국유기업 제한, 국내규제, 구속강제 등)과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들이 있기에 공공서비스 보호 또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독한 무역전쟁과 ‘처벌’을 감내할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한번 자유화한 것은 더욱 자유화할 수 있을 뿐,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중의 기본권을 초국적 자본 앞에 무력화하는 것이며, 심각한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 서비스협상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가?**

한 마디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의료·문화·기간시설 등 소위 ‘공공서비스’는 물론이며,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세분화하여 포괄한다.

서비스협정이 규정하는 서비스는 12가지 범주로 나뉘지며, ‘기타’ 항목을 제외한 11가지는 다시 160여 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 서비스협정의 서비스 분류

- 1) 전문서비스, 컴퓨터,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
- 2) 우편, 통신, 시청각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3) 엔지니어링, 공사 등이 포함된 건설서비스
- 4) 중개, 도매 등 유통서비스
- 5) 초중등, 성인교육 등 교육서비스
- 6) 하수, 폐기물 등 환경서비스
- 7) 보험 및 모든 은행업무가 포함된 금융서비스
- 8) 병원, 사회복지 등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9) 호텔, 안내 등 관광서비스
- 10) 오락, 도서관 등 문화·스포츠서비스
- 11)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등 운송서비스
- 12) 기타서비스

그런데, 첫 11가지 범주 모두 '기타'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12번째 범주인 '기타서비스'도 사실상 '그 외 모든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 대상은 무한정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나 에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상수도(물) 사유화를 '환경서비스'로 분류하여 협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유화는 '기타서비스' 하에 협상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협상의 친구들!  
서비스 협상 그룹 'Friends'

'프렌즈(Friends)'는 WTO 내 유사한 입장을 가진 협상그룹을 의미하는데, 서비스협상에서도 프렌즈 그룹이 있다. 이들은 협상을 주도하면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서비스협상의 '프렌즈'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프렌즈는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서비스 협상 때 서비스 자유화 촉진, 양허안 제출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 발표한 바 있으며, 서비스 자유화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벤치마크' (즉,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규범을 만듦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사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준) 도입을 위해 열심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빠질 리 없다. 외교통상부는 "향후 Friends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공동 협상 목표 및 벤치마크 논의 등에 적극 참여, 우리 입장 반영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 DDA 서비스협상동향, 2005년 3월 28일)**



### #3 WTO 서비스협상 어디까지 왔는가? '양허안'을 제출한다던데, 무엇인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장내외에서의 시위와 저항으로 무산되고,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의제'를 간신히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도 결렬되자, WTO 안팎에서 '위기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농업과 공산품 관세 인하와 관련 개도국들과 강대국들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서비스협상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WTO의 '위기론'이 제기되면 제기될수록 이를 가속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만만치 않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2004년도 7월, WTO 일반이사회(수개월에 한번 씩 진행되는 주 제네바 대사들 간 회의)에서 DDA 협상의 기본골격이 전격 합의되면서 서비스협상 양허안을 2005년도 5월까지 제출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WTO 사무국과 서비스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서비스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만반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3년 3월, 교육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2005년 5월 내로 2차(수정) 양허안을 제출한다.

## ▣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서비스협상

서비스 협상은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다자간 협상, 그리고 세부적인 서비스 자유화 관련 양자간 협상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은 2002년도에 상대국별 ‘양허요청안’을 제출했는데, 양허요청안이란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개방하라’는 요청이다. 2004년까지 약 25개국이 한국에 요청안을 낸 상태이며, 한국은 36개국에 양허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03년부터 회원국들은 ‘양허안’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양허안이란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개방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을 가지고 회원국들은 양자간 협상을 벌이면서 실제로 무엇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를 국가별로 결정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05년 3월 현재 약 91회 양자간 협상을 진행한 상태이다. 다음 다자·양자간 협상은 6월 중하순과 9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7월 말 일반이사회에서 서비스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의 모든 통상 관련 협정은 외교통상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 외교통상부는 각 부처로부터 무엇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를 하나의 양허안으로 만들어 WTO에 제출한다.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재정경제부의 지원 속에서 외교통상부가 하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외교통상부 관료들은 대부분 강력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공공서비스와 민중 기본권의 운명이 이들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허안이란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개방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 ■ 서비스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004년 7월 31일 WTO 일반이사회:

- DDA 기본골격 전격 통과
- 2005년 5월까지 서비스 2차 양허안 시한 결의



2005년 5월 31일까지 2차 양허안 제출



2005년 6월 말 ~ 7월 초 (제네바)

- 양허안을 놓고 국가 간 양자간 협상 진행



2005년 7월 28, 29일 WTO 일반이사회 (제네바)

- DDA 세부원칙안 통과 및 서비스협상 관련 결의문 채택 예상
- 벤치마크 도입 압력



2005년 9월 (제네바)

- 양허안을 놓고 국가 간 양자간 협상 진행



2005년 10월 경

- 노무현 정부 서비스산업 관련 '로드맵' 예정
-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및 추가 자유화 계획



2005년 12월 13-18일 WTO 각료회의 (홍콩)

- DDA 세부원칙 통과
- 벤치마크 등 서비스 자유화 강화 방안 도입 협상 예상



2006년 봄 3차 양허안 제출 예상

- 한국은 서비스 '로드맵'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양허안 제출 가능성 농후
- 2006년 동안 양자간 협상 계속



2006년 말(?)

- WTO DDA 및 GATS 2000 협상 완료 및 새로운 무역규범 탄생



#4  
한국 정부 양허안,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서비스협상에 공공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시장화를 요구하는 양허요청안은 철저히 비공개이다. 정부는 다만 주요 국가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밝히고 있을 뿐이다.

### 한국에 대한 주요 국가 양허요청안 내용

#### 1) 미국

-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 개방
- 우편, 송달 분야에서 특급배달 서비스 개방
- 시청각서비스에서 영화상영 분야 개방
-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통신(지분제한 완화 등) 개방 확대
-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전체단계에서 개방 요구

## 2) 유럽연합

- 법률, 회계, 컴퓨터, 부동산, 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 개방
- 우편, 송달,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분야 개방 확대
- 뉴스기관 분야 개방
- 운송분야 전체에서 개방 확대를 요구  
(철도 및 도로운송 분야 포함)

## 3) 일본

- 법률, 컴퓨터, 부동산 등 사업서비스 개방
- 통신, 건설, 유통, 금융 등에서 기존 제한 철폐
- 교육분야 개방
- 해운분야에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방 추가

## 4) 중국

- 법률, 의료(한방 포함) 등 전문직 서비스 개방
- 우편, 송달, 교육, 환경, 운송 등 개방 확대
- 영화상영 분야 개방
- 통신 지분 제한 완화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주요 기간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행히도 유럽연합 양허요청안의 경우, 유럽 및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수하여 인터넷에 공개했다. 영국 시민단체가 유럽연합의 양허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의 양허요청 대상 국가 총 109개 중 94개가 개도국 또는 체제전환국이며, 최빈국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 정보통신, 교통, 유통 그리고 특히 상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등이며,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무려 84개국에나 요구했다.

한국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에 전문서비스, 경영서비스, 체신 및 배달, 정보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에이전시, 교통·운송과 에너지 분야의 개방을 요청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국통신을 직접 지목하면서 해외 개인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개방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해운, 철도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공항 관리,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개방도 요구하고 있다.

## ▣ 한국의 주요 분야 양허 현황 및 계획

서비스	핵심 양허 내용
Mode 4 (자연인이동)	일정한 학력, 전문자격 요건 및 경력 요건을 명시할 것을 검토 중.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단순노동력은 제외.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전문기술자격자를 받고자 검토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 교수, 학원강사 등은 개방 항목에서 제외시키려 함.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 신규 철도 노선 설비와 운영 (기존 철도 노선은 개방하지 않음), 최혜국대우 면제조치 폐지.
항공	항공기 수리 및 정비서비스, 지상조업 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양허요청 받은 상태, 그러나 건교부는 서비스협정 항공부속서에 의해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 협상대상은 컴퓨터 예약(CRS), 비행기 정비, 티켓판매. 1차 양허안에 의해 최혜국대우 면제조치 폐지.
에너지	가스 도매 직도입 확대 요구받고 있으나, 정부는 직도입권 확대 계획 없다고 발표. 90년대 석유산업 자율화 조치 이후 전력 및 가스산업의 국가독점 해체가 이미 상당히 진전 - 이를 WTO에 재확인하는 차원이 될 것임.
환경서비스	폐기물이나 하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양허를 요구받았음. 특히 유럽연합으로부터 음용수 집수, 정화, 제공 포함을 요구받고 있음. 1차 양허안에서 산업폐수 등 양허. 2차 양허안에 민간위탁된 환경서비스(생활폐수, 거리위생, 제설 등)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가 입장정리를 한 상황임.
통신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강력히 요구받고 있음. 설비기간 서비스, 재판매 서비스 간 차별대우 폐지, 설비보유 및 재판매에 기초한 부가 통신 서비스 허용 요구받고 있음. 통신 역시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된 상태이며, WTO에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임.
엔터테인먼트	1차 양허안에서 뮤지컬, 연극, 라이브밴드, 오페라 등 개인 및 단체공연에 대해, 외국인공연자 또는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토록 주선하는 사람은 한국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도록 양허를 낸 상태임. 공연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연인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나 기획사 도입 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교육	1차 양허안에서 초·중등교육제외, 고등·성인·기타교육만 개방하였음, 단, 과실송금, 학력인정, 내국인입학, 학교설립 등은 제외하였음, 1차 양허안에서 시장접근은 제한, 내국인대우는 양허하였던 것을 양자가 상충된다 보고, 양자 모두를 미양허하는 수준에서 2차 양허안 제출. 그러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된 마당에 이후에 초·중등개방과 내국인입학, 학력인정, 과실송금 등 쟁점 사안이 개방될 것이라 예상

## ■ 새로 내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내주고 있다!

2003년 3월, 전교조 등 교육계의 강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차 양허안 제출을 강행했다. 투쟁의 성과로 교육분야 양허로부터 초중등 교육을 제외되었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만 포함되었다. 심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보건의료와 시정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고, 법률서비스도 일부 개방했다. 또한 통신과 금융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유화한 부분을 양허안에 명시함으로써 '국제법화'했으며, 신규 철도사업에 초국적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을 했다.

정부는 1차 양허안에 이어 2차 양허안도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만 명시'하겠다고 밝힌다. 실제로 언뜻 보기에 1997년 IMF 구조조정과 김대중 정권이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상당 부분 자유화되었고, 공기업 사유화도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다. 보건의료는 작년 말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자유화되었고, 교육도 4월 국회에서 외국인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자유화된다. 즉, 이미 WTO와 무관하게 국내법을 통해 일차적 자유화·사유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허안이 문제인가?

앞서 밝혔듯이, 양허안을 통해 협상 대상에 오르고 그럼으로써 WTO 체제로부터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자유화·사유화가 국제법이 되고 또한 영구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친민중적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엄청난 대가(WTO 제소, 엄청난 배상, 무역전쟁 등)를 지불하지 않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외 시위와 저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WTO를 통해 직접 자유화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유화하고 WTO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저항을 무마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이 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것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양허안이며 WTO 서비스협상의 본질인 것이다.





**민중의 제반 권리를 짓밟아버리는  
WTO 서비스 협상**

5.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① 공교육공공의료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6.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② 철도, 에너지, 상수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

7.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③ 금융화, 투기화, 항시적 경제위기

8. 자발적 자유화란 무엇이며, credit은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인가?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1) 공교육 공공으로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 공교육 붕괴: 서비스 협상이 완료되기 이전 교육을 이윤의 도구로 활용하라!

2003년 3월 31일 교육주체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민적 정서 또한 WTO 교육개방은 제고해야 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은 제출되었다. 1차 양허안의 내용은 2003년 현재 현행 수준에 그치는 정도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03년 말 '경제자유구역및국제자유도시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교육부에 의하여 입법예고 되었다. 내용의 문제점은 차지하더라도 단 한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를 거쳤을 뿐인 절차상으로도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법안이라 하겠다.

약 2년간의 강한 저항과 비판의 지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2005년 4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4월 28일 몇 시간만에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교육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였다.

2005년 2월 임시국회에 4월 임시국회에 각각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시도하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한

없는 내국민입학, 이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꿈꾸는 ‘교육장사치’들이라는 것이다.

## ❑ 공교육의 붕괴 어디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 목적은 외국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교육 환경개선에 있다. 그러나 제정 목적과는 180% 상반되게 국내 진출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을 입학케하여 초기 재정적자를 해소시키자는 논리가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게 된다. 즉,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이윤논리’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보다 자유로운 국내 진출을 허용하게 한다는 것이 본래의 속마음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정부와 교육위원들의 막판 야합을 통하여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내국민입학 비율과 이에 따른 학력인정을 대통령령으로 돌렸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기간 정부와 외국교육기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40%선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견지되는 가운데,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전개 가운데 국내 공교육의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본 법안이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일적인 범위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등교육의 교육개방의 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의 초·중등교육의 교육개방 요구는 시간상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더욱 문제는 교육에 대한 영리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교육이 지식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서 이윤추적기제로 남게 되는 순간, 교육활동 전반은 이윤에 종속된다. 부실 대학퇴출, 국립대 민영화 정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조심스레 등장하는 논리는 ‘부실대학에 대한 영리행위 인정’이다. 이것과 함께 봐야 할 점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혜를 들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역차별 논리이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사실상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흐름을 국내 교육기관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것이 핵심 주장일 것이다.

교육이 상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육=상품=이윤’의 공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교육이 상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이미 ‘교육=상품=이윤’의 공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윤기체이며 보다 많은 자본축적이 교육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영리행위 인정은 사실상 열리게 되었다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 공공의료 붕괴: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장화’ 되고 있는 공공의료

보건복지부는 1차 양허 시기에 서비스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 양허안(개방계획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2차 양허시기에 추가 개방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WTO서비스 협상은 일괄타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야의 타국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몇몇 분야의 개방을 허용하는 맞교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서비스 양허안에서 보건의료가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자발적으로 보건의료를 사유화하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관했으며, 재정경제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화 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며, 국제적 수준으로 의료를 산업화하겠다고 땡땡거리고 있다. 한국의 의료 부문은 이미 병원 자본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환자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 자본의 몰상식함을 몇 가지 규제로 간신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기면서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까지 활성화된다면 빈곤층, 저소득층은 갈 곳을 잃고 공공의료는 무너질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의료의 상품화 현상은 현재보다 더 심화되게 되고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을 것이며, 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의료로부터 소외되게 될 것은 뻔하다.

## ■ 병원이 영리법인=주식회사로 바뀐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영리법인병원들이 속속 설립될 것이고, 국내병원들도 ‘역차별’하지 말라며, 국내의료기관들까지 모두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영리법인이면, 외국인은 병원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가질 수 없고, 병원의 수익은 모두 병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 외국인이 그 병원의 관리인으로 일하면 월급은 받을 수 있지만, 병원 자본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주식 투자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는 없고 ‘투자액’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외국병원이면 국내병원이면 모두 국민의 ‘건강’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수익’과 ‘이윤’을 내는 것에 몰두할 것이 뻔하다.

그 밖에도 병원의 인력·시설 기준, 응급실 설치 규정 등의 완화가 같이 진행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및 철폐는, 외국 의료자본과 미국 등의 강대국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개방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국내 병원과 의료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즉, 의료서비스 개방과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어져 버리면서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의 병폐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더불어 병원 노동자의 노동·임금·고용 조건도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병원자본은 “의료시장 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의료서비스산업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명분으로, 병원 측은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계약제를 국내 병원이 쫓아 시행하면서 병원노동자의 고용 불안정도 심화될 것은 명백하다.

## ■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사회가 양극화 된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영리병원이 비보험 고가 의료서비스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국내 병원은 뒷집만 지고 있을까? 당연히 외국 병원처럼 돈 되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될 것이다. 보험환자를 거부하고 비싼 진료비를 내는 비보험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도 더욱 활성화되어 대형·전문·고급병원과 연계된 보험 상품이 판매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만큼, 건강보험은 부실해진다. 외국의료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며, 의료서비스도 고가의 돈 되는 의료서비스만 제공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원하는 것은 국내/외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 보험회사들은 당연하게도 가입자들이 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등 보험탈퇴를 유도하는 사례는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다.

## ❏ 노무현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의료의 자발적인 자유화조치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은 외국 유명한 병원이나 고급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나 노인, 장애인, 기존 질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못 받고 죽어가야 한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류층은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으며,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은 더욱 축소되고 공보험체계는 아예 무너질 것이다.

WTO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한다지만, 노무현 정부는 의료를 ‘신 성장산업’으로 키우려하면서 온갖 규제를 풀고 의료를 아예 ‘기업화, 산업화’시키려 한다. 노동자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 ❏ 문화다양성 붕괴: 상당히 진척된 문화시장화

한국은 이미 문화분야의 상당부분을 개방한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그 이후의 협상과정을 통해 한국은 문화분야에서 광고, 사진, 신문·정간물을 제외한 인쇄·출판,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 시장 등을 개방했다. 전체 WTO 회원국들의 개방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은 한국의 개방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일례로 144개 WTO 회원국 중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를 개방한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문화시장 개방은 한국의 문화환경과 문화산업에 커다란 폐해를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분야를 들 수 있다. 영화 제작·배급시장의 개방으로 외화직배가 시작된 1988년 이후 평균 30~40% 수준을 유지하던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1993년에는 15%수준까지 떨어진다.

## ❏ 문화 시장화를 강요하는 사람들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개방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90년대 중반이후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바탕은 영화분야에서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았던 스크린쿼터제였다. 어마어마한 미국 문화산업에 맞설만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고 용단폭격식 배급과 홍보를 하는 미국 미디어기업의

문화상품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최소한의 원칙 까지도 무시한 채 무한대의 자유경쟁만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문화 개방은 몇몇 초국적 미디어기업에 의한 문화의 독점, 문화의 획일화를 불러와 각국의 문화 황폐화와 세계 문화다양성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WTO의 도하개발의제(DDA) 서비스협정과 쌍무투자협정(BIT),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 방송까지 내주라급소?

현시기 한국에 대한 문화시장 개방압력의 핵심은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발행하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방송프로그램 쿼터, 방송에 대한 외국지분 참여제한 등을 지목하면서 이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는 방송시장 개방 압력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선부른 개방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1994년 방송 분야를 전면 개방하면서 각종 방송쿼터가 폐지되고, 주요 방송사들이 외국자본에 흡수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에 문화적 위기를 느껴 방송프로그램 쿼터와 대중음악 쿼터를 도입하려 했으나 WTO의 규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방송시장 개방은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되고,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시장 개방은 결과적으로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삶과 정서를 표현하는 우리 문화를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분야에 대한 통상협정 거부와 개별국가의 문화정책 수립, 집행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개방은 ...

... 각국의 문화 황폐화와  
세계 문화다양성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2) 철도, 에너지, 상수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 가속화

### ▣ 공공부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유화해서 시장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

공공부문 비효율성은 정부 내지는 WTO가 시장화, 사유화를 정당하기 위해 항상 내세우는 논리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오히려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즉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부문에 수익성을 강요함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 경쟁 도입, 사유화는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면 악화시키지 극복방안이 될 수는 없다. 공공부문 비효율성은 사실 핑계일 뿐이다.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는 자본에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열어주는 것일 뿐이며, 이 속에서 보편성과 공공성,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공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 ▣ 에너지 사유화: 기초 필수품인 에너지 안정적 공급 저해, 가격 인상, 공공성 저해, 노동유연화

실제로 발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후 통합구매의 이점이 사라져 석탄의 구매단가가 높아지고, 원자력 비중의 지나친 확대에 의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지연, 설비 예비율 증가로 인한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쟁도입으로 가스가격 하락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격변

동성이 확대됨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 인력의 축소로 인한 서비스 만족도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쟁도입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남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개방과 사유화는 산업의 대외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부른 에너지산업의 개방과 사유화는 공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기초생활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와 시장개방은 기초 필수품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심각히 저해하며, 비수익지역에 대한 공급회피 등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 또한 사유화와 시장개방은 필연적으로 투하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을 보장주며, 이에 따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시장화는 서비스의 세분화와 무료 서비스의 축소 등을 통해 사적이윤을 확대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수반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축소는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 체납가구가 IMF 이전보다 많아져 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자기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에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유화는 기본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 시장화, 사유화는 인력감축과 외주하청의 증가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가스 산업의 경우에도 특정 직무에 대한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배치 등 해고의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가스산업 사유화에 대한 노정 합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가스 사유화는 유보된 상태이며, 전력 역시 2002년과 2003년 발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일단 사유화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특히 미국이 WTO와 FTA를 통해 한국 에너지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와 FTA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주식상장 등의 방식으로 사유화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산업의 개방과 사유화는 공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기초생활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게다가 에너지는 이라크 전쟁에 발발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정세 상 지정학적, 안보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사유화와 제국주의적 군사행

동 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 ■ 안전한 물 공급마저 위협

“20세기에 석유가 우리에게 약속해주었던 것을 21세기에는 물이 대신할 것이다.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귀중한 생필품이다. (...) 세기가 바뀌어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는다면 물로 눈길을 돌려라”  
- Fortune誌 2000년 5월 특집기사 중

물은 “블루 골드” 라는 별칭이 붙여지고 있을 만큼 21세기 새로운 “금” 산업이다. 그런 만큼 유럽이나 미국의 물기업들은 앞 다투어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히 해당 국가의 상수도를 사유화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물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비단 상수도라는 기간산업의 문제 뿐 아니라 환경제약을 불러온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수질 악화, 기술발전 미흡 등 질적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유로 초국적 자본에 개방 및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상수도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국적 자본 진출과 사유화(공사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친 후 본격 추진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2005년 하반기부터 특·광역시 상수도 공사화를 추진하고 지방상수도까지 점차적으로 공사화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른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유화는 공공의 통제성과 안정성, 안정성을 모두 와해할 수 있으며 게다가 물이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또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안전한 물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경영을 내세워 결국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영개선 방안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 상수도(물) 사유화의 재앙... 그리고 희망

1998년 세계은행의 ‘협박’ 하에 볼리비아 코차밤바 시는 시의 상수도 공급권을 베텔의 자회사인 아구아스 델 뚜나리에 넘겼고, 이 회사는 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물이 사유화된 후 요금은 135%나 인상되자 코차밤바 시민은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결국 베텔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베텔 사는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물이 사유화된 이후 수도물 사용료가 150% 인상했으며, 영국에서는 106% 인상했다. 영국의 경우, 그 동안 수도사업을 맡았던 기업이 692%의 수익 증가를 맛보았다. 인도의 경우, 일반인 평균수입의 25%를 수도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물사유화는 지속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 곳곳을 휘저으면서 물을 사유화하고 있는 한편, 물사유화를 저지하고 물을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몇 개 도시에서는 사유화된 물을 다시 공공사업으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루과이에서는 2004년 10월 31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물 사유화를 금지시키는 헌법 개정이 있었다. “물수호를 위한 헌법 개정안”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30만 명의 지지와 함께 발의했으며, 국민투표에서 62.75% 찬성표를 얻었다. 한국에서도 물사유화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의 나서고 있다. 현재 민간위탁이 마산 칠서정수장, 논산시 상수도, 서울 암사정수사업소 오니정수처리장, 전주시 상수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마산 칠서정수장의 경우 민간위탁이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비스협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3) 금융화, 투기화, 항시적 경제위기

## ▣ 규제완화와 팽창의 관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자본시장 활성화, 대내외적 금융자유화 등 대대적인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취했던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조치를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철폐하는 조치였다. 1) 공공법인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개방했다. 국내의 상장

주식, 협회등록주식, 주가지수 선물 옵션 및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MMF 및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취득  
도 허용했다. 다만, 포철이나 한전과 같은 공공법인에 대해서만 종전의  
25%취득한도를 30%까지 늘려주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의 직접투자  
에 대한 제한을 대폭 축소하였고, 외국인의 우호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주식매입은 무제한 허용하였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  
에 기여하는 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주식취득을 10%까지는 승인  
없이 즉시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복현,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그러나 초국적 자본들은 이런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조치와 취약한 자본시장 등으로 인해 개방의 성과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이후 금융 관련 정책들은 금융자본의 활동에 제약이 되

던 각종 조치를 철폐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맞춰졌다. 보험업법 개정,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등 각종 규제조치를 조정하여, 금융 산업에서 겸업화, 대형화를 촉진했다. 또한 기업연금제 도입(2005년 7월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2005년 4월 임시국회 계류 중)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자유화, 탈규제화 조치는 분명 자본의 금융적인 팽창을 위한 것들이고, 민중의 소득과 기본적인 권리를 볼모로 한다. 이런 자유화, 탈규제화 조치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 부문 사유화로 계속 확장되고, 연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는 핵심에 WTO DDA 서비스협정이 놓여있다.

## ■ 금융서비스 협정 내용이 궁금하다!

금융서비스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Mode 3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 제한조치를 철폐할 것이 주된 요청이다. 자국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지사를 외국에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분소유, 법적형태, 공급자의 수나 지역에 대한 제한을 없애달라는 요청이다. 뿐만 아니라 Mode 1(국경간 거래)과 Mode 2(해외소비)에서의 자유화 조치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현재 자국 시장에서 이와 같은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이유는 투명성과 건전성에서 검증되지 않는 개도국의 금융기관이 자신의 시장에 접근하여 불안정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Mode 1, 2, 3에서 자유화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국 금융회사와 산업의 양적, 질적인 우위를 앞세워 신흥시장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개도국, 신흥시장들은 주로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 제한 조치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조치들이

Mode 1과 Mode 3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대한 초민족적 자본이 지금까지 제3세계 국가에 유입되어 행해 온 행태들을 보았을 때, 개도국과 신흥시장이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한 조치마저 철폐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선진국의 각종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은행들이 개도국에 유입되고, 이들은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개도국 민중의 소득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다. 개도국 민중들은 자신의 저축과 임금, 노후를 위한 연금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버팀목으로 내어주고, 그들을 위한

민중들은 자신의 저축과 임금,  
노후를 위한 연금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버팀목으로 내어주고, ...

수수료도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금융자본이 선전하는 안정적인 미래나 고소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 ■ 강대국에겐 딸랑이 제3세계에게는 엄포

한국의 경우 주로 Mode 3에서 제한 조치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를 상당부분 시행한 한국의 입장에서 개도국 및 여타 신흥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경우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한 수준에서 자유화되어있고, 몇몇 부속부분(손해보험 국경간 거래 제한 정도)에서 제한 조치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는 부속부분까지 자유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금융서비스 협정에 임하는 자세는 아직 개방과 자유화가 미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방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선진국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금융서비스 협정에서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이 금융서비스 개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켜세우면서, 이는 IMF 등의 국제기구(및 미국)의 요구를 잘 수행한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서비스 협정을 둘러싼 국내 금융 산업의 이해도 금융서비스 협정을 추동하는 하나의 동력이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에서는 금융서비스 협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부분을 분석, 연구하고 정부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을 진출 대상으로 보면서 Mode 3에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서와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사실 금융 부문을 자유화, 개방하면서 한국이 겪어온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국제, 국내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들고남을 반복하며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배당, 유상감자 등과 같은 금융기법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껍질만 남은 회사를 팔아먹는 행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브릿지 증권, 론스타 등).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도 이런 투기 자본이다. 물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미 한국의 자본들도 '초국적화'되고, 금융적 기법을 통한 이윤 추구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라 말해지는 이런 상황은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금융서비스 협정에서 한국의 이런 개방, 자유화 조치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도 떠들고 다니며, 다른 제3세계 국가에 강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재벌들, 초민족적 자본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금융시장 개방, 자유화를 확대하여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고,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바로 한국의 민중들이며, 제3세계 민중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금융서비스 협정의 후과야말로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되, 서비스 협정 전 영역에 걸쳐있는, 그리고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에 놓여있는 부분이며, 그만큼 민중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투기자본 부추기는 WTO,  
투기자본 통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최근 초국적 투기 자본의 횡포가 날날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자 정부 일각에서 은행의 해외 이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투기자본 통제 조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외국인 차별, 즉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WTO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업고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핵심 기제인 WTO가 이런 '부당한' 규제를 가만 놔둘리 없다.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다행인 것은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인 한덕수 총리가 이런 조치를 반대하면서 초국적 자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8  
 자발적 자유화란 무엇이며, credit은 있는가?  
 : 먼저 국내 규제를 완화하라! 그럼 credit이 주어지리라?

### ▣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속내가 궁금하다.

서비스 협상 분야인 통신 분야에서 97년 통신협상 이후 국내 자발적 자유화 조치 내용을 2003년 3월 31일 1차 양허안에 반영하였다. 내용인즉슨, 기존의 KT의 외국인 지분이 33%로 되어 있던 것을 49%로 확대 한 것을 양허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외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WTO 협상과는 별도로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WTO 양허안에 포함되어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WTO 시장화 기제이다.

기존의 상품무역협상은 '관세'가 무역의 장벽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물, 에너지, 교육, 의료 등 보이지 않는 물질과 같은 서비스 부분은 '국내 규제'가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서비스 협상의 있어 장벽으로 여겨지는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다른 하나로 서비스 부분의 지속적인 시장화를 촉진시켜 모든 영역의 시장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WTO의 야심을 채우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 그럼 크레딧(credit)은 무엇인가?

2003년 3월 7일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서비스협정 제19.3조에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크레딧(credit) 부여 방식(modalities)이 채택되었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개방 협상을 실시하는 것과 별도로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 개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국내 규제들을 완화·철폐하여 협상 이전 서비스 개방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크레딧’란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특혜 조치로 알려진 ‘크레딧’이 부여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럼으로 ‘크레딧’은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시장화 조치를 실시케 하는 일종의 ‘당근책’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특혜조치인 ‘크레딧’은 사실상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 ▣▣ 크레딧(credit)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협상은 기본적으로 양자협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며,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크레딧 부여 방식은 세 가지 형태이다.

*그러나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특혜조치인 ‘크레딧’은 사실상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 ① **적극적·공격적 credit** : 자발적 자유화 조치 시행국이 해당 교역 상대국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유화 양허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
- ② **소극적·방어적 credit** : 자발적 자유화 조치 시행국은 교역 상대국이 양허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 수준을 낮추어 양허 할 수 있는 형태.
- ③ **맞교환(trade-off)** : 타 서비스 분야 또는 농업이나 비 농산물 등의 맞교환을 포함하여 상대 교역국과 합의할 수 있는 형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부여 방식은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마지막 맞교환 형태이다. ‘맞교환’이란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실시할 경우 서비스 산업 이외의 공산품, 농업 부분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다. 예컨대, 마늘 협상에서 마늘 개방이 마늘 농업 분야의 큰 타격을 준다면 하더라도 휴대폰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분의 개방 효과로 그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즉, '마늘 주고 핸드폰·자동차 받고'식의 협상 방식이 세 번째 부여 방식의 핵심 요소이다. 결국 선(先) 시장개방에 따른 별도의 '크레딧' 효과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 시장개방에 나서도록 선동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크레딧'은 사실상 별도로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제가 되면 문제일 수 있다.

'크레딧'은 양허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요구 수준을 조정하는 차원의 것이다. 즉, 협상 과정 안에서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변화될 수 있는 허구적 정치 수사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부재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로 허술한 단계의 협상 능력을 가지고서는 과연 크레딧이라는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런지도 미지수이다. 이러한 실체가 불분명한 '크레딧'을 허공에 띄워놓고 뭔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서비스 협상 완료 시점 이전에 서비스 부분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진면모라 정리할 수 있겠다.





**WTO 서비스 협상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켜내자!**

9. “개방이 대세다?!” 노무현 정부의 진실...? 혹은 거짓!
10.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9  
 “채방이 대세다?!”  
 노무현 정부의 진실...? 혹은 거짓!

### ▣ ‘방안’ 아닌 ‘선진통상국가 방안’ 한번 거들떠보자!

지난 4월 6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른바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가 논의되었다. 적극적인 해외투자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개방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노동의 유연화·불안정화를 촉진하고 이와 반대로 적극적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포함, 초국적자본에 대한 무한한 규제완화가 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제정하여 의료와 교육을 이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도 외국투자유치라는 같은 목적 하에 추진된 것이다. 이번 ‘선진통상국가 방안’에서도 보건의료, 교육, 금융, 법률, 회계 등 10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진척속도가 느린 WTO 서비스 협상과는 별도로 더욱 적극적인 공공서비스 부분의 시장화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제정되었던 ‘FTA지원특별법’을 칠레 이외에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에

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FTA지원특별법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여기에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노동부분의 지원을 통합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FTA지원특별법'이 농민들의 지원이 아닌 목줄을 묶어매었던 것처럼, '무역조정지원법'은 무늬만 '조정과 지원'일 뿐, 실상은 대량 실업, 노동 불안정화 등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인 것이다.

## ❖ 과연 WTO가 대세인가? '대세'에 가려진 '진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WTO로 인해 삶의 기초를 빼앗긴 이들의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1999년 수만명이 시애틀 거리고 나와 WTO를 몸으로 막아냈던 시애틀 전투, 이후 2000년 워싱턴과 프라하, 2001년 퀘벡과 제노바, 2002년 바르셀로나로 이어지는 국제적 대규모 투쟁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 지방자치단체<sup>2)</sup>유럽연합 차원의 공식기구<sup>3)</sup>는 아니지만, 유럽 30개국 250여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구들은 유럽지방회의를 중심으로 '탈 GATS 지역(GATS - free zones)' 선포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WTO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 시의회에서 서비스협정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기타 스위스 지자체에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식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탈 GATS' 선포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는 600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1998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민중의 대규모 저항으로 물 사유화 주범인 바텔사를 몰아내었던 투쟁, 스페인·아르헨티나·헝가리 등의 물 사유화에 대한 거센 투쟁 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WTO로 인해 삶의 기초를 빼앗긴 이들의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또한 2002년 10월 18일에서 2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렸던 제9차 'Francophonie(불어사용국) 정상회의'에서는 이 회의에 참석한 55개국 정상들이 문화를 단순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WTO 협상에서 문화분야를 제외해야한다는 베이루트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WTO 교육개방에 대한 전 세계적 반대투쟁도 예외는 아니다. 2003년 노르웨이는 남아프리카의 교육개방 요청안을 철회하였다. 요는 서비스협정이 개발도상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질서라고 여김과 동시에 교육의 공공

성을 기본 입장으로 하였고 때문이다. 또한 2004년 11월 9일 유네스코 산하 EFA(Education For All)의 4차 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의 대표자들(CNTE President Ms Jucara Dutra Vieira and CTERA General Secretary Mr Hugo Yasky]뿐 아니라 양국의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사회적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이므로 시장의 범주인 서비스협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1년 9월 캐나다, 유럽,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을 대표하는 5,500개의 단체들의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서비스협정에서 교육을 제외하라’라는 선언, 2002년 10월 18일 Brixen에서 유럽지역 문화·교육부 장관들의 ‘문화다양성과 서비스협정의 비판을 담은 Brixen선언서’ 등은 ‘교육개방은 대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 진실임에 틀림없다.

### ■ 허위와 조작을 일삼는 노무현 정부! 이것이 이들의 실체이다.

노무현 정부는 WTO와 FTA가 대세라 주장하면서 거짓도 일삼고 있다. 단적인 예로 WTO 교육개방의 일환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이 세계적 대세임을 앞세워 중국과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교육위원들 몇몇이 싱가포르와 중국을 다녀온 이후로 앞선 주장은 완전 거짓임이 드러났다. 초·중등교육까지 교육개방이 전일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국내에 선전되었던 것과는 완전 달리 두나라는 중등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개방은 계획에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거짓 선전과 선동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 #10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 ▣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자 - ‘개방’ 반대가 아닌 ‘시장화’ 반대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는 ‘개방 반대’가 아니다. ‘개방’이나 ‘보호’이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WTO의 본질은 민중의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상품화’ 내지는 ‘시장화’한다는 데 있다. 공공재 또는 공공성을 개인의 소유물이자 이익의 원천으로 전락시킨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민중들의 공공재, 민중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개방반대’라는 구호는 결국 ‘우리 산업(기업)이 잘되면 노동자 민중도 잘 산다’는 허상이자 국수주의적 요구로 오해될 수 있으며, 국제연대를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시장화 반대’가 대중에게 더욱 호소력이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 ▣ 기 제출된 양허안 철회를 요구하자

양허안은 그야말로 제안서이며,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남아공에 제출한 교육분야 양허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는 노르웨이와 남아공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또한 아직까지 1차 양

허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대다수이며 최소한 교육, 의료, 물 등 공공서비스는 양허안으로부터 제외시킨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이 완료되어 철회가 아예 불가능해지기 전에 기 제출된 양허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 ■ 2차 양허안 제출 자체를 저지하자

2005년 5월 말 제출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양허안 제출을 저지해야 한다. 2차 양허안 중 세부 분야에 따라 실제 양허 효과가 큰 분야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강고한 연대의 원칙 속에서 함께 ‘양허안 제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익이 되는 산업’과 ‘피해받는 산업’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 민중들을 분할통치한다. 연대와 단결을 통해 이런 분할통치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이익’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임을 기억하자.

## ■ 서비스협정과 협상의 정치적 본질을 폭로하자

양허안의 실제 자유화 수준이 어떠한든, 양허안을 제출하는 행위와 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협상이 공공서비스 자유화를 국제법화, 영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양허안 저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서비스협정과 이에 기반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최소 수준에서 서비스협정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서비스협정 자체를 타격해야 한다.

##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WTO에서 비단 공공서비스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농업협상은 전세계 농업을 파탄내는 협상이며, 지적재산권 협상은 의약품과 정보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협상이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취급하면서 각국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유연화를 촉진시키며,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다. 아울러 WTO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내법을 통해서든, 양자간·지역FTA나 WTO를 통해서든 - 차원이 다를 뿐 그 목적과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이나 비정규법 개악, 농업 및 서비스 구조조정 정책, 다수의 FTA와 WTO는 모두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비스협정 뿐 아니라 ‘WTO 해체’를 요구해야 하며, WTO 뿐

아니라 FTA와 소위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항한 투쟁을 일관성있게 조직화해야 한다. 서비스협상·양허안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6월 2-3일 APEC 통상장관회의(제주도), 7월 28-29일 WTO 일반이사회 회의(제네바), 9월 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 투쟁(아시아 곳곳), 11월 18-19일 APEC 정상회담(부산) 그리고 12월 13-18일 WTO 각료회의(홍콩), 각종 FTA까지 이어지는 투쟁으로 승화시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를 외치자.

## ❗ WTO 서비스협상 저지를 위해 이런 것을 해보자!

공공서비스(교육, 문화, 의료, 물 등) 시장화하는 양허안 제출 반대한다!

공공서비스 양허안 즉각 철회하라!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권리이다!

민중 기본권 박탈하는 WTO 서비스협상 중단하라!

초국적 기업의 ‘자유’만을 위한 ‘자유무역’, 민중 다 죽이는 ‘자유무역’!

서비스 협상 중단하라! WTO를 해체하라! 등

▶ 단위로 WTO와 서비스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과 선전을 진행합니다.

▶ 단위로 기본달기, 프랭카드 걸기를 진행합니다.

▶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서비스협상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 분야별로 ‘WTO 서비스협상 반대 선언’을 조직화합니다. 교육인 선언, 문화인 선언, 노동자 선언, 보건의료인 선언 등... (5월 중순까지 조직화하여 총화)

▶ ‘서비스협정 저지를 위한 행동주간’을 설정해 WTO 서비스협정, 그리고 양허안의 본질,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비민주성 등을 시민에게 알려내기 위한 집회, 선전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합니다. (5월 말)

▶ 대중적인 힘을 통해 서비스협상과 양허안을 실질적으로 막아냅니다. (5월 말)

## [별첨] 보다 유쾌한(!) 투쟁을 위해

# 서비스협정의 :멋진; 악몽! 초국적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경찰서에서

“경찰아저씨, 도둑을 맞았어요. 어떤 사람이 내 지갑과 시계를 훔쳐갔어요. 바로 5분 전에 말이예요!”

“아, 그래요.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좀 주실까요?”

“젠장. 그 친구가 내 지갑을 가져갔는데... 그 친구를 잡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신용카드가 있지요?”

“어떻든 수사 착수비를 내야 합니다. 선생의 경우 200달러입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지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선생.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주)법과질서’ 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거 잊지 마세요!”

도서관에서

“선생, 미안합니다. 우리 ‘교육서비스社’ 는 더 이상 ‘전쟁과 평화’ 나 제임스 피어 전집, 또는 ‘동물농장’ 과 같은 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도무지 이윤을 내지 못하고 매출액이 완전 핑기거든요. 더군다나 선생의 도서 신용카드에는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조지 부시의 유머와 지혜’ 나 도널드 럼스펠드의 ‘친구에게 폭탄 던져 친구사귀기’ 와 같은 책을 대출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책의 페이지 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요금이 아주 싸요. 또 성경에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10센트! 물론, 저에게 반환해야요...”

“텍스 알 어스” 광고

“국가를 위함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함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물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미사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텍스 알 어스 TaxRUs는 초국적 장난감 회사 Toys R Us를 패러디한 것으로, 사유화된 국제성을 의미한다 - 옮긴이)

강을 건너며

“여보세요, 이 다리로 건널 수 없어요. 저기 있는 다리 보이시죠? 보행자인당 2달러인 최신 초호화판 다리로 건너야 해요. 당산처럼 이 낡고 싼 다리를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월드컴 다리’ 사가 어떻게 이윤을 뽑으내겠어요? 게다가 이 다리는 이미 일분에 매각된 다리란 말이요!”

“근데 전 비싼 새 다리가 필요 없단 말이요. 진짜 천천히 걸어가세요.”

“할 수 없어! 꺼져!”

문산토 울트라 패스트 푸드점

“물 한잔에 햄버거 하나 시키셨죠? 여기 있습니다. 1달러짜리 표준 더러움의 일반 수돗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2달러짜리 문산토 하 이테크 중성자 슈퍼 옥탄수를 원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가게의 유전자 변형 애벌레로 만든 햄버거에는 옥탄수가 제격이에요.”

(문산토 Monsanto는 유전자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악덕 초국적 농산물 기업 - 옮긴이)



### TV에 등장한 대통령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가수비대에게 치안서비스를 아웃소싱함으로써 220억 달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공표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군사비에 17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고소득자 세금을 190억 달러나 줄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혹자는 이런 정책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미국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신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 “뉴 앤더슨 컨설팅 앤드 거버닝 社” 이사회

“잠비아와 두바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산마리노의 통치권 장악 입찰에서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보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향후 2년간의 통치권을 따냈습니다. 우리는 기업경영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근데, 잠비아 말을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앤더슨 컨설팅 Anderson Consulting은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초국적 경영컨설팅 회사이며, 거버닝 governing은 “통치”라는 뜻이다. 옮긴이)

### 미 연방법원

“우리 배심원은 피고 이셔 그린피스에게 유죄 평결을 내립니다. 이셔 그린피스는 갤런의 석유로 15마일 이상을 운반했습니다. 이셔 그린피스씨, ” 엑슨모빌 법정 서비스 社 ”의 이름으로 귀하를 감비니 교화소 1025호 감방에 수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애국의 행동인가를 배우십시오. 석유를 절약하면 안됩니다.”

(엑슨모빌 Exxon Mobile은 초국적 석유 회사. 옮긴이)

### 고속도로 변 광고판

“상상의 나라, 꿈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연료 여행사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꿈꾸게 합니다!”

### 가정은 이윤이 있는 곳

“엄마, 수도꼭지에서 코카콜라가 나와요!”

“베티, 떠들지 말고 마셔. 매주 코카콜라 5갤런을 소비해야 물 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 2년 계약이란 말야.”

### 병원에서

“건강보험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도 물론 없고, 안정적인 주소도 없군요. 그러면서 우리 의료회사더러 등에 꼬인 칼을 뽑고 피를 멈추게 해달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피로 코팩트를 더럽힌 값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요!”



## TV의 뉴스해설

“4년 임기의 법무장관직 임찰에 ‘부시제국 주식회사’에 새로 취임한 5세의 작은 부시가 성공하였습니다. ‘부시제국 주식회사’는 아주 성공적인 정권개별복합체입니다. 작은 부시는 그의 핵심 정책이 ‘디테러’이며 특기는 사탕을 안주면 호대기입니다.”

## 준 도우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인간실형사(가)가 특허를 받은 귀하의 DNA 코드를 알려드립니다. 코드번호는 J.D.#67239/9740D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매회당 1,850달러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는 번식을 위한 귀하의 DNA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인간실형사(가) 회장 케네스 레이 드림.”  
(케네스 레이 | Kenneth Lay는 언론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였다-옮긴이)

## 피츠버그 도심지

“지난달 이곳으로 이사왔군요. 그런데 아직 공기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무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공기 요금을 안 내면 ‘석탄연소 공기제거회사’의 주주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뭐,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등을 안 숙이면 되지요.”

## 공격적인 안내방송이 나오자 지상철 안에서의 경발

“어이쿠!!! WTO, IMF나 세계은행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제국에서의 삶은 완전 악몽이야!”  
“말 조심하네 나는 CIA 요원이다!”  
“뭐야, 국토안보부에 의하면 당신처럼 간첩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나!”  
“물렸어요? 우리 이제 Controlling Individuals Agency(개인통제부)예요. 그러니까 말조심하고 행동조심해요! 아니면 죽어버리던가!”

## 그리고 마차심대

‘고안4차 주식회사’의 2/4분기 수익이 37%나 증가했습니다.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인데, 고인을 좋은 용도로 사용하고 자 개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품의 브랜드는 ‘오해완전 고자’입니다.

이 글은 [www.skog.de/engats.htm](http://www.skog.de/engats.htm)에서 가져왔으며, 저자는 제레 스코그(스웨덴 작가이자 음악가)입니다. 번역은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에서 했습니다.

2005년 5월 6일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공공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범국민교육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한국노총 (가나다순)

편집·디자인: 나무

문의: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02-778-4007 / kopa@jinbo.net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서준섭 통상담당) 02-2077-0618 foreigntrade@kdlp.org

